

의안번호	2218123
의 퇴 인	김정재의원
회 답 일	2026.7.3.
추계번호	26B1936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 (정의)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6. “기반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 다. 유통업무설비, 수도·전기·가스공급설비, <u>수소배관시설</u> ·방송·통신시설, 공동구 등 유통·공급시설	재량규정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2조(정의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상 기반시설의 종류에 ‘수소배관시설’을 추가하려는 것으로, 수소배관시설이 공동구에 수용되는 경우 동법 제44조제6항¹⁾에 따라 공동구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

1) 제44조(공동구의 설치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·지구·구역 등(이하 이 항에서 “지역등”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1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
 2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
 3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
 4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
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
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, 도시·군계획 시설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104조제2항²⁾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개별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그런데, 공동구 내 수소배관시설 설치 여부, 설치규모, 도시·군계획 내 수소배관시설 설치여부, 사업시행자, 보조·융자 여부 및 재정지원의 방법과 규모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서는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데 한계가 있음
- 다만, 국토교통부는 수소도시를 선정하여 통합운영시스템, 수소추출기, 연료전지, 배관망 등 수소인프라 구축 및 설계비 등 지원을 지원하는 ‘수소도시지원사업(5642-301)’³⁾을 시행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음
 - 수소도시 사업지는 남양주, 평택, 당진, 보령, 광양, 포항, 양주, 광주동구, 부안, 서산, 울산, 울진, 영암(신규), 청주(신규), 안산(신규) 등임

⑤ 공동구의 설치(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.

2) 제104조(보조 또는 융자)

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,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1. 도로,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
2.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
3. 개발제한구역(집단취락만 해당한다)에서 해제된 지역
4.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·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·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

3) 가. 신규지역 (3곳 800백만원)

- 수소도시 지자체 별 마스터플랜, 세부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
- * 안산, 청주, 영암

나. 계속지역(12곳, 45,220백만원)

- 수소배관망 공사 및 연료전지 구입 등 수소인프라 구축지원
- * 남양주, 평택, 당진, 보령, 광양, 포항, 양주, 광주동구, 부안, 서산, 울진, 울산

자료: 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

[표 1] 수소도시지원사업: 2024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2024	2025	2026
수소도시지원사업	29,700	44,430	46,020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□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

III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